

문교사회위원회소관

'91세입, 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

# 검 토 보 고 서

1992. 12.

문교사회위원회

전 문 위 원

# 목 차

I.	결산 총괄 -----	17
	1. 세입결산 총괄 -----	18
	2.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 결산 -----	19
	○ 일반회계 -----	19
	○ 특별회계 -----	20
	3. 세출결산 총괄 -----	21
II.	보사환경국 소관 -----	22
	1. 일반회계 세출결산 총괄 -----	23
	□ 검토의견 -----	24
	2.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총괄 -----	28
	□ 검토의견 -----	29
III.	가정복지국 소관 -----	30
	1. 세출결산 총괄 -----	31
	2. 검토의견 -----	31

# I. 결 산 총 괄

# I. 결 산 현 황

## 1. 세입결산 총괄

( 단위 : 백만원 )

회 계 별	예 산 액	징 수 결 정 액	수 납 액	불 납 결 손 액	미수납액
합 계	410,609	453,663	444,198	179	9,286
일 반 회 계	335,512	375,666	368,935	122	6,609
특 별 회 계	75,097	77,997	75,263	57	2,677
○ 공 기 업					
- 공영개발사업	27,997	30,263	27,586	-	2,677
- 지역개발기금	31,647	31,810	31,810	-	-
○ 도로보수중기 운영관리	1,443	1,349	1,349	-	-
○ 주 택 사 업	1,171	1,680	1,680	-	-
○ 의 료 보 호 기 금	11,788	11,740	11,740	-	-
○ 새 마을 소득 지원	414	438	438	-	-
○ 공 유 림 관 리	637	717	660	57	-

-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예산액 4,106억 9백만원에 대하여 110%에 해당하는 4,536억 6천 3백만원이 징수결정 되었음.
- 예산보다 초과징수 결정된 430억 5천 4백만원은 일반회계가 93.3%인 401억 5천4백만원, 특별회계에서 6.7%인 29억이 징수 결정 되었음.
- 미수납액 92억 8천 6백만원은 일반회계가 71%인 66억 9백만원 특별회계가 26억 7천 7백만원으로 29%임
- 불납결손액은 일반회계가 1억 2천 2백만원, 특별회계가 5천 7백만원임.

## 2.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결산

가. 일반회계

(단위 : 백만원)

구 분	예산액	징수결정액	수납액	불납액 결손액	미수납액
합 계	335,511	375,665	368,934	122	6,609
지방세	66,560	104,125	97,810	98	6,217
세외수입	82,873	86,943	86,527	24	392
○ 재산임대수입	38	51	48	-	3
○ 사용료수입	2,523	3,710	3,698	-	12
○ 수수료수입	3,501	3,836	3,836	-	-
○ 사업장수입	775	789	789	-	-
○ 이자수입	1,900	2,905	2,905	-	-
○ 재산매각수입	4,420	5,333	5,320	-	13
○ 이월금	61,526	61,526	61,526	-	-
○ 부담금	3,967	4,204	4,204	-	-
○ 잡수입	4,142	4,405	4,159	-	246
○ 과년도수입	81	184	42	24	118
지방양여금	12,397	12,397	12,397	-	-
지방교부금	77,899	77,899	77,899	-	-
보조금	95,782	94,301	94,301	-	-

- 일반회계 세입예산액 3,355억 1천 1백만원에 대하여 112.0%에 해당하는 3,756억 6천 5백만원이 징수결정 되었으며,
- 예산보다 401억 5천 4백만원이 초과징수 결정되었고
- 징수결정된 3,756억 6천 5백만원중 98.2%에 해당하는 3,689억 3천 4백만원이 수납 되었고, 미수납액 67억 3천 1백만원중 결손처분된 1억 2천 2백만원을 제외한 66억 9백만원의 익년도로 이월되었음.

나. 특별회계

(단위 : 백만원)

회 계 별	예 산 액	징 수 결 정 액	수 납 액	불 결 손 액	미수납액
합 계	75,097	77,997	75,263	57	2,677
○ 공영개발사업	27,997	30,263	27,586	-	2,677
○ 지역개발기금	31,647	31,810	31,810	-	-
○ 도로보수중기 운 영 관 리	1,443	1,349	1,349	-	-
○ 주 택 사 업	1,171	1,680	1,680	-	-
○ 의료보호기금	11,788	11,740	11,740	-	-
○ 새마을 소득 지 원	414	438	438	-	-
○ 공유림관리	637	717	660	57	-

- 공영개발사업등 7개 특별회계는 세입예산액 750억 9천 7백만원에 대하여 103.9%에 해당하는 779억9천7백만원을 징수결정 하므로써 29억원이 초과 징수결정되었는 바, 그 내용은 공영개발사업 22억 6천 6백만원, 지역개발기금 1억6천3백만원, 주택사업 5억9백만원, 새마을소득지원 2천4백만원, 공유림관리 특별회계 8천만원이 초과징수 결정된 반면,
- 중기관리 9천 4백만원 및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 4천 8백만원이 예산액에 미달하는 실적을 보이고 있음.
- 징수결정된 779억9천7백만원중 96.5% 해당액인 752억 6천 3백만원을 수납하였고, 26억7천7백만원이 미수되었고, 공유림관리 특별회계에서 5천7백만원을 결손처분하였으며, 기타 특별회계는 징수결정액 전액을 수납하였음.

### 3. 세출결산총괄

( 단위 : 백만원 )

회 계 별	예 산 액	지출원인 행 위 액	지 출 액	다음년도 이 월 액	불 용 액
합 계	410,609	360,358	349,377	21,423	39,809
일 반 회 계	335,512	314,417	303,865	20,993	10,654
특 별 회 계	75,097	45,941	45,512	430	29,155
○ 공 기 업	59,644	31,556	31,127	430	28,087
-공영개발사업	27,997	16,345	15,916	430	11,651
-지역개발기금	31,647	15,211	15,211	-	16,436
○도로보수중기 운영관리	1,443	1,179	1,179	-	264
○주 택 사 업	1,171	1,006	1,006	-	165
○의료보호기금	11,788	11,598	11,598	-	190
○새마을소득지원	414	412	412	-	2
○공유림 관리	637	190	190	-	447

- 일반 및 특별회계 세출예산은 예산액 4,106억 9백만원에 대하여 결산액 3,493억 7천 7백만원으로서 평균 85.1%를 집행하였으며
- 일반회계 세출결산은 예산액 대 결산액이 90.6%며 특별회계는 예산액 대 결산액이 60.6%임.

## II. 보사환경국소관



## II. 보사환경국소관

### 1. 일반회계 세출 총괄

(단위 : 백만원)

구	분	예산현액	지출액	이월액	불용액
합	계	48,902	45,455	1,722	1,725
일반회계	소계	37,114	33,857	1,722	1,535
	사회복지증진	5,769	5,535	-	234
	노정관리	355	351	-	4
	영세민보호	16,139	15,661	-	478
	의료보험	239	232	-	7
	부랑인보호	1,145	1,138	-	7
	재해구호	148	147	-	1
	보건의정사업	167	148	-	19
	보건기관운영	2,121	2,100	-	21
	의료원 운영	4,610	2,802	1,722	86
	환경보호	5,181	4,544	-	637
	위생관리	259	251	-	8
	보건환경연구원 운영	981	948	-	33
	특별	의료보호기금	11,788	11,598	-

- 보사환경국소관의 '91 세출 예산현액은 총 489억 2백 만원으로 일반회계가 371억 1천 4백 만원 (75.9%)이며, 특별회계는 117억 8천 8백 만원 (24.1%)임.
- 일반회계 세출예산현액에서 338억 5천 7백 만원이 지출되고 17억 2천 2백 만원이 이월되었으며, 4.1%인 15억 3천 5백 만원이 불용액으로 처리되었음.

## □ 검토 의견

'91년 보사환경국소관 일반회계 세출결산 예산현액 371억1천4백만원 중 4.1%에 해당되는 15억3천5백만원이 불용처리된 것으로

- 예산집행 잔액 2억5천7백만원
- 예산 절감액 2천6백만원
- 계획변경 취소 12억2천5백만원
- 보조금집행 잔액 1천7백만원
- 집행사유 미발생 1천만원으로 각각 기인하고 있음.

그 내용을 세항별로 살펴보면,

### ○ 사회복지증진비에 있어서는

예산현액 57억6천9백만원중 4.1%인 2억3천4백만원이 불용처리된 것으로 예산절감액이 6백만원이며,

- 예산집행 잔액은 1억8백만원으로

장애인이용 시설운영비 지원 7천8백만원이 인건비, 운영비 등으로 시설별 정산결과 집행잔액이며,

- 계획 변경취소는 1억2천만원으로

장애인의료비 신청실적이 저조하여 8천 8백만원이 계획 변경되었고,

장애인시설 기능보강사업비 1천9백만원은 국고보조 절감계획에 의하여 감액내시 되었음.

- 노정관리비는 4백만원이 불용처리된 것으로 예산절감 6십만원과 예산집행 잔액으로 발생한 것임.

○ 영세민보호사업비는

예산현액 161억3천9백만원중 3%인 4억7천8백만원이 불용처리 된것으로

계획변경취소가 4억 7천 6백만원이 주요원인으로는

- 생활보호자 직업훈련비 6천8백만원은 대상자 감소로 국고지원이  
감액내시 되었고,

- 사회복지 전문요원 인건비중 당초호봉 과다책정으로 4천 9백만원.

- 저소득층 직업훈련비는 전액도비로 대상자 감원으로 3억4천3백만원.

- 거택 및 시설보호자 월동대책비 8백만원 등이 계획변경 취소된 것임.

○ 의료보험비는 7백만원이 불용처리된 것으로 예산집행 잔액임.

○ 부랑인보호비는 7백만원이 불용처리된 것으로 전액 예산집행잔액임.

○ 재해구호비 1백만원은 예산집행 잔액으로 불용처리 된 것임.

○ 보건의정사업비에 있어서는

예산현액 1억6천7백만원중 1천9백만원이 불용처리된 것으로

· 예산집행잔액 8백만원

· 예산절감 5백만원,

· 계획변경, 취소 1백만원,

· 집행사유 미발생 5백만원 등으로 발생한 것임.

○ 의료원 운영비에 있어서는

예산현액 46억1천만원중 1.9%에 해당되는 8천6백만원은 전액 예산집행

잔액으로 청주의료원 토지매입비로 매도자 不應으로 발생한 것임.

○ 보건기관 운영비는 2천1백만원이 불용처리 된것으로

- 예산집행 잔액 4백만원과
- 보조금 집행잔액 1천7백만원은 자치단체 경상보조비로 보건소 운영비 4백만원과 인건비 1천1백만원 등으로 잔액이 발생되었음.

○ 환경보호비에 있어서는

예산현액 51억 8천 1백만원중 12.3%인 6억 3천 7백만원이 불용처리된 것으로 그 내용은,

- 예산집행 잔액 8백만원
- 예산절감 3백만원
- 집행사유 미발생 4백만원
- 계획변경취소 6억 2천 1백만원 등으로

주요원인은 청주권 광역쓰레기 매립장 건설이 환경처의 사업계획 변경되어 계획 취소된 것으로 보조재원을 효율적으로 집행하기 위하여는 사업수용태세 확보와 계획적인 사업 추진에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으로 사료됨.

○ 위생관리비는 8백만원이 불용처리된 것으로

- 예산절감 1백만원과
- 퇴폐, 변태, 시간외 영업단속 優秀 시군 시상이 내무국으로 계획이 변경된 것임.

○ 보건환경연구원 운영비는 3천3백만원의 불용처리된 것으로

- 예산집행 잔액 2천4백만원과 예산절감 9백만원으로 발생한 것임.

이상과 같이 사회복지업무는 국고지원에 따른 예산편성으로 계획적인 사업추진에 많은 어려움이 있겠으나 소요액을 정확히 판단 산정 계상 하고 계획, 여건 등의 변동이 있을 때는 이를 조정하여 불용액이 발생 되지 않도록 능동적으로 대처하는 노력이 있어야 할 것임.

## 2. 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 세입세출 총괄

### ○ 결산세입 총괄

(단위 : 백만원)

과 목	예 산 액	징수결정액	수 납 액	비 고
합 계	11,788	11,740	11,740	
이 월 금	182	182	182	
용자금회수수입	85	37	37	
전 입 금	1,926	1,926	1,926	
잡 수 입	1,895	1,895	1,895	
국고 보조금	7,700	7,700	7,700	

### ○ 결산세출 총괄

(단위 : 백만원)

과 목	예 산 액	현예산액	지 출 액	이 월 액	불 용 액
계	11,788	11,788	11,598	-	190
기 금 운 영 비	67	67	66	-	1
사 무 비	34	34	34	-	-
의 료 보 호 비	11,582	11,582	11,498	-	84
예 비 비	105	105	-	-	105

## □ 검토 의견

### ○ 세입에 있어서는,

징수결정액 117억 4천만원에 대하여는 전액 수납되었으나, 용자금 회수수입 4천8백만원 세입결함은 의료보호대상자의 용자금 상환시기가 미도래하여 발생한 것으로 적정을 기한 것으로 사료됨.

### ○ 세출에 있어서는,

예산현액 117억 8천 8백만원중 1.6%인 1억 9천만원이 불용처리된 것으로,

· 예산집행잔액 6천 9백만원은

의료보호대상자에 본인부담금 의료비로 용자해 주는대불금의 신청 실적이 저조하여 3천5백만원 발생되었고,

· 시군 의료비 지원비중 대상자 감소와 추가 발생을 예상한 유보인원에 대한 의료비 3천 3백만원 등으로 발생되었으며,

· 집행사유 미발생 1천 6백만원은

증평출장소 의료보호 대불금 미신청분으로 발생한 것이고,

· 예비비 1억 5백만원은 집행 요인이 발생되지 않아 불용액으로 처리었음.

이상과 같이 예비비가 전체 불용액의 55%를 차지하고 있으며, 예산집행잔액과 집행사유 미발생분도 불가피한 것으로 사료됨.

### III. 가정복지국소관



### III. 가정복지국소관

#### 1. 세출총괄

(단위 : 백만원)

과 목		예산현액	지출액	이월액	불용액
계		7,622	7,519	-	103
일 반 회 계	아동복지	2,756	2,731	-	25
	노인복지	3,400	3,385	-	15
	부녀복지	203	192	-	11
	청소년복지	861	828	-	33
	여성회관운영	402	383	-	19

- '91년 가정복지국소관의 세출 예산현액은 총 76억 2천 2백만원으로 이중 75억 1천 9백만원이 지출되었고 이월액은 없으며, 1.4%에 해당하는 1억 3백만원이 불용액으로 처리되었음.

#### 2. 검토의견

가정복지국소관 '91년 결산 예산현액은 76억 2천 2백만원중 75억 1천 9백만원이 지출되었고 1억 3백만원이 불용처리된 것으로

- 예산집행 잔액 6천 6백만원
- 예산절감액 1천만원
- 계획변경 취소 2천 7백만원으로 각각 기인하고 있으며,

그 내용을 세항별로 살펴보면

- 아동복지비에 있어서는 2천 5백만원이 불용처리된 것으로,
  - 예산집행잔액 1천만원은 보육시설, 아동시설 등 시설운영비, 인건비 조정, 수용인원의 변동으로 9백 8십만원이 주 요인이 되고 있음.
  - 계획변경 취소는 1천 4백만원으로 보육, 아동시설 증개축에 따른 시설비로 사업변경에 따라 국비가 감액내시되었음.
  
- 노인복지비는 1천 5백만원이 불용처리된 것으로
  - 예산집행 잔액이 1천만원으로 인건비 8백만원, 수용비 및 수수료 등으로 잔액 사유가 발생되었으며,
  - 예산절감 2백 5십만원은 관서당경비의 예산절감액임.
  - 계획변경 취소 2백만원은 노인복지시설운영비 보조금 정산잔액임.
  
- 부녀복지비는 1천 1백만원이 불용처리되어,
  - 예산집행잔액은 9백만원으로 강사수당과 사례집 발간, 합동결혼식 보상금 등이 미집행된 것으로 예산편성과 계획적인 사업 추진에 미흡한 점이 있는 것으로 보임.
  - 나머지 예산절감은 절감계획에 의하여 발생한 것임.
  
- 청소년복지비는 3천 3백이 불용액으로 발생되어
  - 예산집행 잔액이 2천만원으로 강사수당, 청소년직업훈련대상자 감소, 청소년 육성사업 책자 발간 감소 등으로 잔액이 발생한 것이며,
  - 계획변경 취소는 1천 1백만원으로 청소년수련마을 건립비 1천만원 이 사업변경으로 국고내시 감액된 것임.

○ 여성회관운영비는 1천 9백만원이 불용처리된으로

- 예산집행 잔액이 1천 5백만원으로 인건비, 청원경찰 호봉변동 등 6백만,수당 2백만원, 공공요금 3백만원 등이 발생한 것이며,
- 예산절감 계획에 따라 4백만원이 예산절감된 것임.

이상과 같이 불용액은 비교적 많지 않은 금액이지만 예산절감액을 제외하면 확보된 보조재원의 효율적인 관리 운용으로 불용액을 줄이는데 최선의 노력을 경주하여야 하며 추진력 결여, 수용태세 미흡 등으로 편성된 예산 내용대로 집행하지 못한 부분이 있어 예산편성 및 사업집행에 보다 충실을 기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됨.